

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

수정안

의안 번호	3167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0월 22일

제안자 : 박선미 의원

1. 수정이유

- 조례의 제명을 실질적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, 민간위탁시 사무 위탁 조례 준용 및 부칙의 시행일을 명확히 특정하여 시행의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(하남시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)
- 나. 위탁운영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준용 추가(제16조)
- 다. 부칙에 시행일과 준비행위에 대한 내용 명시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하남시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”로 하고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